의안번호	제 139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1월 일 (제 405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
(김현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08일
발 의 자 : 김현문, 이정범,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의원

1. 제안 이유

학생상담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클래스 지원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생상담과 관련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학생상담 및 위(Wee)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바. 위(Wee)클래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학교상담자 대상 학생상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생활교육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고민을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교상담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지원·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Wee) 클래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상담 및 위 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동 및 위(Wee) 클래스 운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4. 상담 분야별 심화 상담 연계방안 및 협력체계
5. 학교상담자 연수, 사례발표 및 학술연구 지원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위(Wee) 클래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 클래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위(Wee) 클래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Wee) 클래스의 설치·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위(Wee) 클래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운영
2. 상담에 필요한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
3. 위(Wee) 클래스의 비상벨 등 긴급 보호 장치 설치

제7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교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 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 ⑧ 생략

❒ 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 ⑨ 생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사업 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립학교에 대한 사업의 운영·지원 등을 해당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위 클래스) ①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위(Wee) 클래스의 장이 된다.

② 위(Wee) 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
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
6.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Wee) 클래스는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전문 상담기관 등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Wee) 클래스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 등은 ‘전문상담사’ 등을 일괄 채용하여 위(Wee) 클래스에 배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위(Wee) 클래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위(Wee) 클래스의 비상벨 등 긴급 보호 장치 설치

3.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 (위 클래스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Wee) 클래스 비상벨 설치

- 산출내역

구 분	합 계	산 출 기 초	비 고
비상벨구축	90,000천원	(비상벨) 300천원×300교	설치교 제외

- 비상벨 구성 : 300천원(비상벨 1개, 수신기 1개, 중계기 1개)

나. 추 계 결 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90,000천원 소요

※ 연도별 비상벨 100교 이상교 구축(예정)

다. 재원 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0,000	30,000	30,000	0	0	90,000
비상벨 구축		30,000	30,000	30,000	0	0	90,000
재원 조달		30,000	30,000	30,000	0	0	90,000
자체수입	소 계	0	0	0	0	0	0
	지 방 세	30,000	30,000	30,000	0	0	90,000
	세외수입	0	0	0	0	0	0